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42
----------	------

2019년 12월 17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10월 4일, 송명화 의원 외 15명
- 나. 회부일자 : 2019년 10월 22일
- 다. 상정일자 : 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의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 12월 17일 상정·수정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송명화 의원)

- 가. 제안이유
 - 차량 운행 제한을 위해 승용차요일제와 승용차마일리지를 추진하고 있지만, 승용차요일제의 경우 가입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고 전자태그 갱신률도 낮아지는 등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며, 현재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대상, 신청 및 탈퇴,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내실있는 에너지절약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에 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 추진을 위해 시장, 시민, 자치구청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참여 및 탈퇴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 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이재효)

가. 개요

- 본 제정조례안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이를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며, 현재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에코마일리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 문제

- 승용차요일제는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써 2003년에 종이태그 부착 형태로 처음 실시한 이후, 2006년에 단속을 위한 전자태그로 전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음.
- 승용차요일제 시민 참여는 2012년(1,081천대 참여)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승용차요일제 미이행, 전자태그 미부착 압제운행, 예산 낭비 등에 대한 언론의 지적 및 위반차량 단속의 한계¹⁾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 속에서 2016년 제공되는 인센티브²⁾ 중 가장 혜택이 많은 자동차세 5%³⁾ 감면조항이 폐지되어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승용차요일제 참여율은 2019년 9월 기준 11% 이하로 크게 감소되었음.

1) RFID 단속시스템 운영 현황 : 19개소 52대

- 내구연한(5년) 초과 52대 교체대상, 전자태그 미부착 차량 자동단속 불가
-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용 CCTV와 연계하고자 하였으나 경찰청의 부적합 의견('14. 9.18)으로 추진하지 않음

2)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혜택)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 배정시 가점 부여 및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3) 2016년 승용차요일제 인센티브 혜택 62억 9천9백만원 중 자동차세 5% 감면이 48억 5천5백만원으로 인센티브 혜택의 77.1%를 차지하고 있음.

<연도별 승용차요일제 참여 현황>

(단위: 천대, %)

구분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9
대상	-	-	-	2,141	2,365	2,397	2,421	2,491	2,515	2,442	2,353	2,404	2,455	2,496	2,562	2,576	2,583
참여	1,506	1,945	2,111	653	749	837	943	1,024	1,078	1,081	821	749	678	528	375	318	280
증감		+439	+166	-1,458	+96	+88	+106	+81	+54	+3	-260	-72	-71	-150	-154	-56	-38
(신규)												(+24)	(+22)	(+20)	(+6)	(+5)	(+3)
(탈퇴)												(-96)	(-93)	(-170)	(-160)	(-61)	(-40)
참여율	73.8	74.8	75.2	30.5	31.6	34.9	38.9	41.2	42.9	44.3	34.9	31.1	27.6	21.2	14.6	12.3	10.8

- 반면, 승용차마일리지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고, 마일리지 평가 기준에 있어 회원들이 본인의 차량 운행 패턴에 따라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 중 하나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실질적인 차량 운행량 감축을 유도하고 있음.
- 따라서 현재 유명무실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를 폐지하고 승용차마일리지로 일원화하는 것이 사업 효과 및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또한, 승용차요일제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아온 제도로 이러한 혜택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더라도 당장 폐지하여 혜택 제공을 중단하는 것은 민원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대시민 안내 및 유관기관 협의를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 에코마일리지 운영 등 근거 규정 마련

- 에코마일리지는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서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25조24)에서 동 제도의 실시 및 예산 지원 등 일부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조례에 근거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적용대상, 참여 및 탈퇴신청, 운영, 재정 지원,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세부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3) 기타

- 안 제1조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고 있으나 「대기환경보전법」과 본 제정조례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므로 위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또한, 안 제8조에는 인센티브 제공, 관리시스템 구축, 인센티브 환수 등의 주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해야 하며, 부정확한 용어 등을 바로잡고 문맥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부 조항의 수정이 필요할 것임.

4) ① 시장은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본 제정조례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인센티브 제공, 관리시스템 구축, 인센티브 환수 등의 주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며, 일부 부정확한 용어 등을 바로잡고 문맥을 보다 명확하게 함.

8.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042
----------	------------

제안년월일 : 2019년 12월 17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본 제정조례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인센티브 제공, 관리시스템 구축, 인센티브 환수 등의 주체가 생략되어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며, 일부 부정확한 용어 등을 바로잡고 문맥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골자

- 조례안의 목적에서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삭제함(안 제1조)
-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로 용어를 통일함(안 제7조 및 제8조)
- 에코마일리지 참여자에 대한 정보 및 기술제공,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7조)
- 문맥을 명확히 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함(안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3. 참고사항: 생략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여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기여하도록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
리지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3조제1항 중 “통해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를 “통한 온실가스”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소유자나”를 “소유자 또는”으로 한다.

안 제7조 제목 중 “에코마일리지제”를 “에코마일리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중 “에너지절약을 위한”을 “에너지절약”으로,
“시민들이게”를 “시민들에게”로 한다.

① 시장은 에코마일리지에 참여하는 개인과 사업자단체 회원 등에게 에너지 절
약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마일리지 등 인센티
브를 제공할 수 있다.

안 제8조 제목 중 “승용차마일리지”를 “승용차마일리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승용차마일리지 참여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에 참여”를 “시장은 차량 주행거리 감축 및 운행제한 참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민들의 승용차마일리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시장은 승용차마일리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의 저탄소·친환경 행동을 촉진하고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의 감축 등에 기여함으로써 「대기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기본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에너지절약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5조(참여신청) ① (생략)</p> <p>② 승용차마일리지의 경우 홈페이지에 의한 가입은 차량 소유자 본인만 할 수 있고 해당기관 방문을 통한 가입은 차량 소유자나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p> <p>제7조(에코마일리지제 운영) ①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제도에 참여하는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평가를 통해 정보, 기술, 재정 등을 지원 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에너지절약을 위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장바구니,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p> <p>③ ~ ④ (생략)</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여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기여하도록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기본 책무) ① ----- ----- 통 한 온실가스 -----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5조(참여신청)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소유자 또는 -----.</p> <p>제7조(에코마일리지 운영) ① 시장은 에코마일리지에 참여하는 개인과 사업자단체 회원 등에게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p> <p>② ----- 에너지절약 ----- ----- 시민들에게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제정안	수정안
<p>제8조(승용차마일리지 운영) ① <u>승용차마일리지 참여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동차 운행 제한에 참여한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u></p> <p>② <u>시민들의 승용차마일리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그에 따른 지원,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u></p> <p>③ ~ ④ (생략)</p>	<p>제8조(승용차마일리지 운영) ① <u>시장은 차량 주행거리 감축 및 운행제한 참여 -----</u> ----- -----.</p> <p>② <u>시장은 승용차마일리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u>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절약을 유도하여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의 감축에 기여하도록 서울특별시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 마일리지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코마일리지”란 전기, 수도,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에너지절약에 대해 마일리지 방식의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
2. “승용차마일리지”란 시민이 자율적으로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면 감축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기본 책무) ①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에너지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과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과 자문 등을 통해 기후변화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자치구청장은 에코마일리지와 승용차마일리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자치구가 시행하는 기후변화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에코마일리지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회원과 공동주택단지, 학교, 기업, 소상공인, 종교시설 등 사업자단체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승용차마일리지 대상차량은 시에 등록된 비사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이며, 대상자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이다. 그 외에 법인 또는 단체 소유 자동차, 렌터카, 사업용 자동차 등은 제외한다.

제5조(참여신청) ①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신청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승용차마일리지의 경우 홈페이지에 의한 가입은 차량 소유자 본인만 할 수 있고 해당기관 방문을 통한 가입은 차량 소유자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탈퇴신청 등) ①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탈퇴할 수 있다.
② 홈페이지를 통한 승용차마일리지 탈퇴는 차량 소유자 본인만 할 수 있고 해당기관 방문을 통한 탈퇴는 차량 소유자 또는 그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승용차마일리지 가입자 중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권 탈퇴 처리할 수 있으며, 자진 탈퇴 및 직권 탈퇴한 경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간 재참여신청을 제한한다.

제7조(에코마일리지 운영) ① 시장은 에코마일리지에 참여하는 개인과 사업자단체 회원 등에게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보와 기술을 지원할 수 있으며, 평가를 통해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에너지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장바구니,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참여자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에코

마일리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참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승용차마일리지 운영) ① 시장은 차량 주행거리 감축 및 운행제한 참여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게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승용차마일리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승용차마일리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승용차마일리지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승용차마일리지 참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은 경우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재정적 지원 등) ① 시장은 자치구의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 활성화에 기여한 시민, 단체, 공무원 및 기관을 포상할 수 있으며,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에코마일리지 및 승용차마일리지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보급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입된 승용차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모든

혜택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종료된다. 다만, 자치구의 경우에는 자치구 관련 조례나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